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 무 부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서 론 1

가. 가이드라인의 작성 배경과 목적 1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기본 방향 2
다. 가이드라인의 효력 및 한계 3

2.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3

가. 개관 3
나.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의 판단 및 이사회 결의 4
다.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6
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13
마.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 14
바. 개인정보 보호 체계 16

3. 소집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18

가. 소집통지와 소집공고 18
나. 전자출석 사전 신청 21

4. 총회 진행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25

가. 주주 본인 확인 25
나. 대리인 본인 확인 등 26
다. 출석 방법의 변경 등 28
라. 주주의 질의 및 발언 등 28
마. 의결권 행사 및 표결 32
바. 총회의 연기와 속행 35
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36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5. 종료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37

가. 의사록의 작성 37

나.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의 보존·비치 및 공시의무 37

다. 후속조치 등 39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서 론

가. 가이드라인의 작성 배경과 목적

2025. 7. 22.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가 신설되어 상장회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위 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의 총회(이하 “현장주주총회”라 한다)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상법에 도입된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현장병행형(Hybrid)’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소집통지, 관리기관, 운영, 출석방법,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등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수행기준 및 절차 등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출석 신청방법, 주주의 질의·발언 제한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시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였다.

다만 고시 제정 이전이라도 연성규범의 형태로 바람직한 업무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작성된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 한

다)은 회사(이하 해당 회사의 이사 및 의장을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하기 위해 유의 및 참조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① 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도모하고, ②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이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기본 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모든 상장회사(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적용된다.[1] 즉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선택한 상장회사 및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모두에 적용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상법이 허용하는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즉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면서 '현장출석 주주'(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주주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와 '전자출석 주주'(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주주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의결권 행사를 함께 인정하는 '현장병행형(Hybrid)'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것이다.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출석 주주의 의결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현장대체형(Virtual-Only)'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의 병행을 상정한다. 즉 전자주주총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가 단일한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완전히 분리하여 관련 법령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주총회 실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 사이의 실질적 형평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

1) 상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온라인 생중계만을 제공하고 온라인 주주의 출석·의결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 '현장중계형' 방식은 주주가 사전투표 또는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중계에 참여하고자 할 때 활용되어 왔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현장중계형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중계형 방식은 상법상 전자주주총회가 아니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장중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와 함께 현장중계형을 운영하면서 현장중계형 참여방식을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이드라인의 효력 및 한계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의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본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쟁점에 관하여 법원에 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만이 보유한다.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 청구 또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특정 소송에서 당연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여부 및 이사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회사가 원활하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 및 운영하기 위하여 유의하고 참조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회사가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지도하지 않으며, 회사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본 가이드라인이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상황 또는 기술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다른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따라야만 회사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가. 개관

전자주주총회의 사전 준비 단계는 ①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개최 대상회사'인지 또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임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임의개최 대상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을 갖추며, ③ 회사가 선택한 운영 방식(직접 운영 또는 관리기관 위탁에 의한 운영)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직접 갖추거나, 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복합적인 실무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 후속 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상당수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어떠한 설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답이 정해진다.

나.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의 판단 및 이사회 결의

(1) 임의개최 대상회사와 의무개최 대상회사의 구분 기준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4 제2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자산총액 2조원은 상장회사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3]를 어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무상 문제된다.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는 문언상 직전 결산일을 가리키므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일 현재 (미승인)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② 재무제표는 당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산일 현재의 미승인 재무제표가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즉 최초로 2조원 이상이 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연도 말 이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물론 해당 정기주주총회 자체에 대하여도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위 의무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②의 해석이 바람직하다.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등으로 자산총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특례가 없으므로, 상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동일하게 직전 결산기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그다음 사업연도 중 신규상장된 경우, 그 상장 이후부터 바로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3) 결산기 말을 의미하며, 이는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임의개최 대상회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옵트 아웃(opt-out) 방식[4]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배제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한, 상장회사는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배제조항의 신설 또는 삭제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한편 비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대다수 상장회사 정관은 종전 표준정관에 따라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한다”라는 소집지 조항만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 조항은 전자주주총회 제도 성문화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가상공간 참여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소집지”와 “출석 방식”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정관변경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임의 개최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상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또는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 조항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무개최 대상회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

의무개최 대상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재량이 배제되고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배제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상법 제542조의14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에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조항(예: “주주총회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이 있는지 점검하고, 만일 있다면 이를 삭제·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개최 대상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상법 제366조)에도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4) 전자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62조). 소수주주 등에 의한 예외적 소집이 아닌 경우 전자주주총회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① 임의개최 대상회사의 경우

4) 특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정관 등에 이를 배제한다는 별도 문구를 두어야 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정관 등에 특정 조항을 추가해야만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옵트 인(opt-in) 방식이라고 한다.

정관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배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임의개최 대상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려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일시·소집지·목적사항 외에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한다는 뜻을 결의하고, 이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의무개최 대상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이사회 결의 없이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관리기관 위탁 여부, 사전 신청제도의 도입여부 및 방법·기간, 질의·발언의 횟수와 시간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 운영방식을 세세하게 결의하지는 않고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일반기준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친 운영규정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5)]

다.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1) 개최요건 개관 및 운영 방식에 따른 구분(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①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②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본문).

회사는 직접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이하 “직접 운영”이라 한다), 상법 제542조의15 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이하 “위탁 운영”이라 한다). 즉 회사는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절차적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관리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②·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단서). 즉 회사는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①의 운영규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②·③의 요건은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신 관리기관은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 수행 인력, 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체계 등 물적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2. 다. (2) 참조.

한편 회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부 관리조직을 유지해야 하고, 위탁이 회사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위탁 여부 및 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위탁의 범위는 본인확인, 영상·음성 중계, 질의응답 지원, 표결 및 집계 등 "전자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도구적 업무"로 한정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중단·연기·폐회·안건 상정·발언 허용 등 의사진행 그 자체는 회사(의장)의 판단과 책임하에 둔다. 회사는 운영을 관리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관리기관의 적격성(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여부를 선정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기준 및 절차)'의 구비

1) 법령 및 기본 방향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관리기관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양자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주주총회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여 현장주주총회 및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두면서 그 하위 규정으로서 전자주주총회에 관하여 별도의 세칙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운영규정의 구비는 '전자출석 주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현장출석 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질의·발언·투표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위 운영규정에는 주주의 출석,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질의 및 발언, 투표, 장애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결정 및 준비, 소집: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결정 절차, 사전 신청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소집통지 기재사항
- 출석과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등: 본인 및 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확인의 방법, 전자출

석 주주와 현장출석 주주 또는 사전 의결권 행사(서면·전자투표) 주주의 대조절차를 통한 중복여부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진행: 질의와 발언이 제한되는 경우 그 기준, 화면 또는 음성의 송출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장애 발생 시 대응: 통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총회의 연기·속행 등 대응 방안
- 기록의 보존

운영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6] 다만, 통신장애 발생 시의 총회 연기·속행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1) 법령 및 기본 방향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력 요건이 면제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관리 업무 수행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내부 관리조직의 구성과 규모는 회사 규모·주주 수·위탁 범위 등에 따라 조정하되,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무별로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 여러 임무를 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장의 질서유지·의사정리 권한[8]과 실무 담당자의 지원 역할을 구분하고, 주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실무 담당자의 임의 처리에 맡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세부 보고·승인 및 점검 방식은 회사가 내부 운영절차에서 정할 수 있다.

---

6) 2. 나. (4) 참조.
7) 4. 바. (2) 참조.
8) 상법 제366조의2 제2, 3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및 의사정리 권한은 총회의 의장에게 있다.

- 총괄 책임: 전자주주총회 준비·운영 전반의 총괄, 이사회 보고, 관리기관과의 계약·협의, 당일 의장 보좌(장애 시 연기·속행 등 의장 판단을 위한 상황 보고)
- 통신·시스템 담당: 즉시성·쌍방향성 등을 갖춘 전자통신수단의 구축·운영·보수, 설비·회선 이중화, 보안 대책, 리허설 주관, 당일 시스템 모니터링과 장애 판단·복구 지휘
- 주주확인·접수 및 현장 운영 등 지원: 사전 신청 접수·심사, 본인 및 대리인 출석 확인, 당일 현장 접수와 전자주주총회 출석의 실시간 대조 및 중복 방지, 표결 개시·마감 안내, 출석 주식 수·찬반 의결권 수 집계, 현장 중계 촬영(주주 초상권 보호[9])
- 의장의 의사진행 지원: 질의·발언 접수 채널 운영, 운영규정에 따른 1차 분류(중복·부적절 내용)와 그 기준 및 처리 내역의 기록, 의장에게 전달, 의안 접수, 발언 순서·시간 관리
- 법무: 운영규정·소집통지 문안 검토, 당일 법적 쟁점(대리권 다툼, 본인확인 요구, 발언 제한, 장애 시 처리)에 관한 자문, 의사록·기록 보존 검토
- 개인정보보호: 수집 항목·동의 절차 설계, 접속기록·영상의 보존·파기 관리, 유출 사고 대응
- 주주 지원: 사전 신청·접속 방법 안내, 접속 테스트 지원, 당일 기술 문의 응대, 접속 불능 주주에 대한 대체 수단 안내
- 기록관리: 장애 발생·복구 경과와 의사결정 과정의 당일 기록

한편 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인력 요건이 면제되지만,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관리기관 위탁은 회사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회사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개최·운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관리조직 및 업무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 내에 전자주주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 전자통신수단의 즉시성과 쌍방향성

1) 법령 및 기본 방향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중 제3호는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9) 4. 사. 참조.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라고만 규정하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 물적 설비는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실시간 참가가 가능한 적정한 운영)과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즉시성·쌍방향성)를 기준으로 필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이는 ① 전자적 방식(디지털·인터넷 기반의 유무선 정보통신망, 기기 제한 없음), ② 쌍방향성(일방향 중계가 아니라 주주의 발언·질의·표결이 회사에 송신되고 회사의 응답이 주주에게 전달될 것), ③ 즉시성(이메일·서면과 같이 비실시간인 수단 배제)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2) 매체의 선택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상법은 전자통신수단으로 특정한 매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즉시성·쌍방향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은 주주가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어떤 매체를 택하더라도 ① 전자출석 주주가 의장·이사의 설명과 다른 주주의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고, ② 자신의 질의·발언·표결을 실시간으로 회사에 도달시킬 수 있으며, ③ 그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전달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체를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향	권고 매체	이유
회사(현장주주총회) → 전자출석 주주	영상+음성+자료화면(슬라이드) 동시 송출을 원칙으로 함.	대부분의 주주는 영상에 익숙하고 현장 상황·시각자료를 종합하여 의사를 결정하므로 영상이 바람직함(다만 현장출석 주주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10]).
전자출석 주주 → 회사(현장주주총회)	문자 입력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음성 또는 영상 채널을 병행. 음성 또는 영상의 송출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다수의 질의·발언을 처리하기에는 문자가 적절할 수 있음(문자는 주거환경 노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크지 않음) 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성, 영상 송출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0) 4. 사. 참조.

표결의 경우 중계영상 등의 지연이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결 시에는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선택한 후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이 완료되면 즉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즉시성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은 '즉시' 전달할 것을 규정할 뿐, 허용되는 지연 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스트리밍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미한 지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성 요건을 결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서버 부하 등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지연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총회의 진행 상황이 곧바로 공유되어 의사참여의 실질이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다.

- 회사(위탁 운영의 경우 관리기관)는 목표 지연 시간을 정하고, 리허설·당일 모니터링으로 실제 지연을 측정·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위탁 운영의 경우 관리기관)는 지연을 전제로 의사진행을 설계한다. 질의 접수 마감 시각과 표결 마감 시각을 정할 때 지연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감 시각을 미리 고지한다. 마감 후 집계·결과 표시까지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목표 지연 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표결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정상적 표결이 어려운 경우 총회의 연기·속행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결 채널에 대해서는 중계 영상의 지연이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물적 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능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신청: 주주명부 대조를 통한 사전 신청 자격 확인, 사전 신청·철회 접수 등 이력의 관리, 대리인 정보 입력 및 위임장 첨부(전자문서), 사전 신청·철회 접수 결과에 대한 확인 수단 제공 기능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입장: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1항 제1호·제2호의 본인확인수단 또는 제2항의 주주식별번호·암호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구현, 대리인 출석의 경우 위임장 확인, 중복 로그인 제어 기능
- 출석 관리: 출석 여부와 접속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내역 출력. 입장 및 퇴장 시각 기록, 전자출석 주주와 현장출석 주주 또는 사전 의결권 행사(서면·전자투표) 주주의 실시간 대조 확인 및 중복 발생 시 사전 고지된 방법에 따른 처리, 안건별 표결 시점의 출석 주주 수·주식 수 실시간 집계, 정족수 산정 기능
- 자료 게시: 회의자료·의결권 행사 참고자료와 주주에게 제공할 안내·비치서류의 열람·게시 기능
- 중계: 영상·음성·자료화면 송출 기능
- 질의·발언: 질의·발언의 채널(원칙적으로 문자), 질의·발언 가능 횟수와 시간 설정, 문자 입력을 통한 질의·발언의 경우 글자 수·입력마감 시간 설정, 회사가 영상·음성을 통한 질의·발언을 허용하려는 경우 그 송출 및 제한의 설정, 질의 접수 목록의 의장에의 전달 기능
- 표결: 안건별 찬성·반대·기권 선택, 전송 완료 확인, 표결 마감 자동화, 집계(현장출석, 전자출석 및 사전 의결권 행사 주주의 표결 결과 실시간 통합) 및 검증 기능
- 기록: 접속·출석·표결·질의·발언 기록 및 타임스탬프 부착, 이력 관리 기능
- 보안·연속성: 접근통제, 암호화,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대응, 서버·회선 이중화, 장애 감지·통보,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및 재해복구(DR) 체계
- 개인정보 보호 체계[11]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취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호환성·범용성: 다양한 기기·운영체제·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기능

11) 2. 바. 참조.

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1) 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탁 개관

상법 제542조의15 제2항은 회사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문상 관리기관의 "지정"은 회사와 관리기관 간 사법상 계약(위임)에 의하여 성립하고, 관리기관은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관리기관의 고의·과실로 로그인·실시간 표결에 장애가 발생하여 주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회사 측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관리기관과의 책임 분담은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서비스 수준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관리기관은 ①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② 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필요한 물적 설비, ③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2) 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력(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호): 전자주주총회 운영 담당자, IT 시스템 운영인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장애 대응인력의 확보 여부 등
- 물적설비 및 재해복구·업무연속성(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2, 3호): 2. 다. (4) 4)의 각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예상 전자출석 주주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동시접속 처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기타: 주주지원 센터(전화, 채팅 상담 등)의 운영 여부 및 범위, 유사 규모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또는 전자투표 운영 실적 및 사고 이력, 손해배상 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재무건전성

(3) 관리기관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서에는 ① 위탁업무의 범위와 회사·관리기관의 의무, 책임분담 등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기본계약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12] 및 ③ 해당

12) 2. 바. (5) 참조.

주주총회의 서비스 범위와 일정, 담당자, 금액 등 구체적인 실행 조건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 계약의 성립·기간
- 위탁 업무의 범위와 내용
- 서비스 수준 협약
- 자료 제공·확인·정정 및 협력 의무
- 리허설, 주주지원센터 등 부수 업무
- 업무연속성과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
- 전자주주총회 결과·기록의 관리와 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와 비밀유지[13]
- 책임분담, 손해배상 및 분쟁 대응
- 수수료·추가비용 및 환급
- 조건 변경·서비스 중단·해지 및 종료 후 처리

마.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

(1) 법령 및 기본 방향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대규모 장애에 의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통신장애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은 ① 준비 단계에서 합리적 대책을 갖추고 통신장애의 위험을 사전 고지하는 것(사전 대응),[14] ② 실제 장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사후 대응)의 두 측면이 있다.

---

13) 상법 제542조의15 제3항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14) 통신장애 등의 위험을 소집통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는 3. 가. (2) 참조.

과거의 정부발의 상법 개정안들[15]에 있던 통신장애와 결의취소의 관계에 관한 규정(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의 소 제기 가능)[16]과 의장의 직권 연기·속행 규정[17]은 개정 상법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전자주주총회에서의 통신장애에 대한 특례가 없는 이상, 회사로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통신장애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충실히 갖추어 둘 필요가 더욱 크다. 회사가 위 ①, ②의 사전적, 사후적 대응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 통신장애로 일부 전자출석 주주의 참석이 제한되더라도 결의취소에 이르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18]

(2) 통신장애 대책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 시스템 및 백업 : 검증된 전문 플랫폼(관리기관 서비스 또는 상용 웨비나·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서버·회선·중계 장비·호스트 계정의 이중화(예: 유선·무선·이동통신 복수 회선, 공동 호스트 설정)
- 용량 산정 : 주주 수가 많은 회사는 소집통지 발송 전에 예년 출석률·주주 수·최근 관심도를 고려한 예상치로 1차 용량을 확보하고 사전 신청 추이에 따라 증설. 접속 수요가 예상을 넘는 경우 용량 확충, 개최일·시간 분산, 지원인력 확대를 우선 검토하고, 당일 접속 대기열이 생기면 대기 주주가 권리행사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의사·표결 진행을 조정.
- 장애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작성
- 당일 시스템 기술진(관리기관 포함)의 현장 배치와 상시 모니터링, 주주지원센터 운영
- 관계자 교육과 결과보고: 의장·이사·감사 등 진행 관계자에게 시스템 사용법을 사전에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0(2023. 11. 24. 정부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3(2024. 6. 27. 정부 발의).

16) 위 상법 개정안은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방법에 흠결이 생긴 경우 이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회사가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주주총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은,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 부분에 대한 부담 내지는 위험을 경감시켜 현장주주총회에서 전자주주총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안자의 정책적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상법은 주주의 총의 형성을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단체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므로 결의의 하자에 관해 회사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데, 전자주주총회라는 이유로 일반 총회와 다른 운영 원리를 설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현저히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개정상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이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421회 제1차), 2025. 1. 22, 63-65면}.

17) 위 상법 개정안에서는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8) 한편 전자주주총회 진행 중의 통신장애로 인한 총회의 연기·속행에 관하여는 4. 바. 참조.

안내·교육하고, 실제 총회 환경에서 접속·본인확인·표결·장애 대응을 시험한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바람직

- 준비완료 확인: 회사는 소집통지 발송 전에 운영규정·수용능력·인증수단·위탁계약·개인정보보호·통신장애 대응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총회 전날에 사전 신청 명부·대리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며, 예비 인력·백업 상태를 확인
- 주주에 대한 사전 고지·안내(소집통지 및 로그인 화면): 전자출석을 선택한 경우 통신장애·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경우의 처리 방침(현장 출석 등 대체 수단, 휴회, 연기·속행 가능성), 접속에 필요한 환경(기기, OS, 브라우저, 통신속도, 앱)과 절차, 기술지원 연락처, 주주 측 환경(기기·회선)에 기인한 장애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교통장애로 현장에 출석하지 못한 것과 같이 결의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

바. 개인정보 보호 체계

(1) 법령 및 기본 방향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사전 신청·본인확인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주번호·주식수·인증 결과, 대리인 정보, 접속기록(IP·기기정보), 질의·발언 내용, 표결 내용, 송출 영상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그중 상당 부분이 관리기관에 의하여 처리된다.

상법은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3호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물적 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제42조의6 제2호는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주주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주명부 기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19] 공포된 상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조문의 문구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변경

19) 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26. 5. 28.자) 제42조의5 제2항은 "법 제542조의15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로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되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이는 회사와 관리기관의 관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관계로 정리하여, 수탁자인 관리기관이 위탁자인 회사의 처리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회사와 관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수집·이용, 관리, 보관 및 파기 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근거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도 법령상 의무 준수(같은 항 제2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같은 항 제4호) 등 적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같은 항 각 호).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성명·주소·보유주식 수 등을 기준일 주주 확정, 소집통지, 출석·의결권 확인에 이용하는 것은 상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처리로 볼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52조 및 제363조 등). 하지만 그 밖에 주주총회(특히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집·처리하게 되는 휴대전화번호·이메일, 본인확인 관련 정보(CI·DI), 대리인 정보, 질의·채팅 내역, 접속기록 및 영상·음성 등의 경우, 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살펴보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 별도 처리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처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며,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하지만 이 조항이 회사 또는 관리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서 회사와 관리기관이 수령하는 정보의 항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 결과값이나 CI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20]

---

20)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사용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 근거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호).

(4) 기록의 보관 및 파기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5 제4, 5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9). 다만 이 조항이 시스템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모든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의무에 따른 보존의무는 그 문언상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동의에 따라 처리한 개인정보는 동의 시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그 밖의 개인정보는 해당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만약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법령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그 개인정보는 해당 보존의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

(5)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대한 처리위탁

관리기관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인확인, 출석관리, 의결권 집계, 질의 접수 및 로그 보관을 수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한다. 이때 회사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보호조치 등을 문서로 정하고, 위탁업무와 수탁자·재수탁자를 공개하며, 수탁자의 처리현황을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위탁계약에는 처리항목과 보유기간, 목적 외 이용금지, 접근권한, 암호화, 재위탁 승인, 사고 통지, 총회 종료 후 자료 인계·파기 및 회사의 점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소집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가. 소집통지와 소집공고

(1) 법령 및 기본 방향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원칙이 그

대로 적용된다. 상장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소집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도 소집공고는 소집통지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전자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하 소집통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의 소집통지에는 기존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에 규정된 사항에 더하여 ①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 ② 출석 방법 및 ③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4 제5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이 중 ② 출석 방법이란 전자주주총회에의 접속·인증방식(공식 앱·URL 등 포함), 접속 가능시각 등을 의미하며, ③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규정된 항목은 아래 여섯 가지이다.

순번	상법 시행령 규정 사항	해당되는 내용(예시)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회사가 채택한 영상 · 음성 또는 문자 방식의 실시간 중계 및 질의 · 발언 방법, (수정)의안 제출 방법, 안건별 투표 및 그 완료 확인 등
2	제42조의7 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신청기간 · 마감시각, 본인 · 대리인 신청, 접수확인, 정정 · 철회, 미신청 효과 등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현장과 전자 중복출석 불가, 전자신청 후 현장출석 시 처리 등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 증명 등의 방법	위임장 또는 전자문서의 제출경로 · 방식, 대리인 인증 등
5	제42조의7 제2항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질의 ·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	횟수 · 시간, 제출 방식 · 마감, 선정 · 병합 · 배제 기준, 미답변 처리 등
6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 OS · 브라우저 · 앱 · 통신환경, 장비, 장애 문의, 보안 유의사항, 동시접속 한도 초과 시 접속 대기 및 입장순서, 의사진행 중단 여부 등 비상 대응절차 등

(2) 구체적 권고사항

상법 시행령에서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들은 법령상 문구를 그대로 열거하거나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가 실제로 전자출석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지면의 제약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링크 또는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상세 안내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사전 신청기간, 접속·인증방식, 대리출석, 질의·발언에 대한 제한과 같이 주주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은 소집통지 본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세 매뉴얼·동영상·자주 묻는 질의 등은 공식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별도로 제공하고, 링크나 QR 코드 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소와 문의처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5호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집통지에 그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발언 제한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는 전자주주총회의 진행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21)]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6호에서의 '기술적 사항'에는 지원 기기, 운영체제, 브라우저 또는 앱 버전, 인터넷 연결조건, 카메라·마이크 필요 여부, 팝업·쿠키 설정, 고객지원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와 같은 장애 발생 사실을 알리는 채널, 재접속 방법 및 회사가 적용할 기본 대응절차 역시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확인 실패 또는 접속정보 분실 시의 재발급 절차, 주주지원센터의 연락처·운영시간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후 회사가 리허설이나 사전 테스트에서 확인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주소, 지원환경, 신청 또는 접속절차에 변경이 생기면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등 당초 안내한 경로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확보한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주주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변경으로 주주의 출석 또는 권리행사 가능성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와 같이 권리행사에 직접 사용되는 정보는 개별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집통지에는 회사 및 관리기관의 공식 도메인, 피싱·스미싱 주의사항, 회사가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전체를 전화·전자우편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접속정보 분실·도용 시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일한 접속정보를 이용한 복수 기기 접속, 주주 본인과 대리인의 중복 접속 또는 보안상 비정상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조건, 재접속 방법과 문의 절차를 소집통지 등에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 4. 라. 참조.

나아가 통신 장애 발생 시 의장에게 총회 연기·속행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22]

나. 전자출석 사전 신청

(1) 법령 및 기본 방향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 사전 신청제는 회사의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도입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호). 회사가 사전 신청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주주의 현장출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사전 신청은 시스템 용량 확보 및 주주 인증 등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로서 주주의 전자출석을 임의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전 신청은 전자출석 의사의 사전표시 및 자격 확인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당일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접속하여야 전자출석이 성립된다. 즉 '사전 신청', '접속정보 발급', '전자출석 성립'은 개념상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2) 신청기간[23]의 설정

모든 주주에 동등한 사전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전 신청 시작 시점을 일부 주주에게만 앞당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전자주주총회가 상장회사에 한하여 개최 가능하다는 점과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집통지서의 도달 시차를 고려하여 전자출석 신청 가능 시점을 일률적으로 늦출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24] 하지만 소집공고 전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주주들과 그렇지 못한 주주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후 회사가 미리 정하여 고지한 특정 시각부터 모든 주주의 사전 신청을 일괄 개시하는 것도

22) 4. 바. (2) 참조.

23) 상법상 전자주주총회는 한국에 본점을 둔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들 회사의 경우 한국에서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이므로 모든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일본의 경우 우편 도달 시차를 고려하여 소집통지 발송일 이틀 뒤부터 모든 주주의 신청을 일괄 개시하는 운영례가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은 사전 신청을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전날'은 영업일(business day)이 아닌 달력일(calendar day)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일 전날보다 앞선 날을 신청 마감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주주총회 전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앞당길 수 없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은 회사가 총회일 전날 특정 시각을 사전 신청 마감 시한으로 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조항은 회사가 사전 신청을 집계하여 주주 인증을 마치고 이에 기초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취지이다.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일 전날 특정 시각까지 사전 신청을 마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다.[25] 다만 이때 주주의 사전 신청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합리성을 갖춰야 하며, 사전 신청 마감 시한은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기준 등으로 미리 확정되어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공고 시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주명부 대조 오류, 회사 또는 관리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사전 신청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주주의 경우에는 마감 시한 이후에도 사전 신청을 받아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전 신청이 가능한 주주 · 대리인과 신청의 변경

전자출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그의 적법한 대리인이다. 무의결권주식의 주주,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 역시 주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확인하고 질의·발언 등 허용된 범위에서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므로,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신청을 거절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이 소집통지 사항으로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 역시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질의·발언 등의 참여를 함께 포괄하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인의 사전 신청은 '대리권 증명'과 '대리인 본인확인'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회사는 소집 통지 및 소집 공고에 대리권의 증명, 대리인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26]

---

25) 전자출석 사전 신청과 마찬가지로 '총회일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자투표의 경우(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도 실무상 총회일 전날 오후 5시를 마감 시한으로 정해 운용하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6) 대리권의 증명과 대리인 본인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4. 나. 참조.

주주 본인이 전자출석할 것을 전제로 사전 신청을 하였다가 총회에는 대리인을 전자출석시키고자 하는 경우, 혹은 대리인을 통해 전자출석할 것을 전제로 사전 신청을 하였다가 총회에는 주주 본인이 전자출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된다. 먼저 회사가 이러한 변경 요청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주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회사가 이러한 변경 요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변경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기존 신청 철회 및 신청기간 내 새로운 사전 신청을 요구하는 등 그 변경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다. ①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호는 회사가 사전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② 주주 본인의 전자출석을 위한 사전 신청 절차와 대리인의 전자출석을 위한 사전 신청 절차가 구분되어 운용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주주평등원칙상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소집공고 또는 사전 신청 화면 등에 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4) 사전 신청제의 구체적 운용

1) 사전 신청의 일반적 절차와 그 안내

사전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주주 또는 대리인의 자격확인, 미비자료의 보완, 신청 확정(또는 거절), 접속정보 발급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는 회사(직접 운영)나 관리기관(위탁 운영)이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접수번호와 접수시각을 자동 부여하고, 접수확인 화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를 신청인이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전 신청을 거절하거나 일정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보완이 필요한 자료, 보완 방식과 기한 및 문의처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사전 신청 과정에서 수집하는 주주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주주자격·대리권 확인과 접속정보 제공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전 신청 기간 중 신청인이 연락처, 인증수단, 대리인 및 제출서류를 정정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그와 같은 정정 또는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이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 신청 화면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와 전자출석 후 의결권 행사의 관계 및 기존 투표의 철회

절차를 안내하고, 이러한 사항을 소집통지에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출석을 신청한 주주가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현장출석을 허용하되, 현장 접수와 동시에 사전 신청을 철회 처리하여 중복 출석과 이중 투표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인 변경이나 위임 철회가 이루어지면 종전 대리인의 접속 권한을 즉시 정지해야 할 것이다.

2) 사전 신청인원의 제한 가부 등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은 사전 신청을 전자출석의 요건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신청자 가운데 일부만을 임의로 선별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회사는 전체 주주 수와 예상 참여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적법하게 사전 신청한 주주가 모두 전자출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관리기관을 선정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예상치를 초과하는 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 증설 방식과 비상조치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전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 가능 인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상법상 사전 신청자 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② 사전 신청을 한 주주가 반드시 실제로 전자출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 신청자 수에 맞춰 총회까지 시스템 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스템 용량 문제로 인해 회사가 적법하게 사전 신청을 마친 주주 중 일부만을 전자출석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석시키는 경우, 일부 주주들의 전자주주총회 참석권 제한이 발생하여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방법 하자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다만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합리적인 예상을 벗어난 신청자 수 폭증 등으로 인해 모든 사전 신청자를 전자출석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일률적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회사가 ① 사전 신청을 마친 주주들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주주총회 개최일 선택, 관리기관과의 충분한 조율 등)를 다했음이 인정되고, ② 사전 신청 접수 결과 시스템 용량에 부족이 예상되자 지체 없이 사전 신청자들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현장주주총회 참석(의결권 대리행사 포함)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불가피하게 전자출석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선착순[27]과 같은 객관

27) 사전 신청을 적법하게 마친 주주의 실제 접속 요청이 시스템의 동시접속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 요청시각에 따라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접속 가능 인원이 발생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접속 요청시각, 대기순번, 입장시각 및 당시 시스템의 처리용량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상법 제379조에 따른 재량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스템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주주의 총회 참석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중요한 의사진행이나 표결을 유보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연기·속행 등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

4. 총회 진행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가. 주주 본인 확인

(1) 법령 및 기본 방향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가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주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전자출석 주주의 본인 확인 방법은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는 사전 신청을 전제로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는바(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 이 경우 사전 신청을 마친 주주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는 반드시 소집통지 시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수의 본인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 현황 등에 따라 총회 당일 주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은 ① 전자서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 확인 방법(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및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방법(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전자출석 주주

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①, ②에 따른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로소 ③ 회사가 마련한 본인 확인 방법(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전자출석 주주로 하여금 ①, ②에 해당하는 복수의 본인 확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28] ③의 본인 확인 방법은 ①, ②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외국인 주주 등)에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③의 본인 확인 방법 활용 시에는 해당 정보 분실이나 유출 등의 경우 본인 확인 불가 상황이나 사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단계 인증이나 복수의 정보 확인 등).

나. 대리인 본인 확인 등

(1) 법령 및 기본 방향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29]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현장주주총회뿐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0]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4 제5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호). 실제 대리권의 증명은 상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는바, 이에 따른 위임장 제출 및 주주 본인 의사 확인 과정에서도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는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때에 대비하여 ① 주주의 대리권 수여 사실을

---

28) 개인주주는 ①, ②의 방법을 복수 활용함이, 법인주주는 ①의 방법을 복수 활용함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 주주는 통상 ①, ②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

29)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30) 다만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서 의결권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등에 의한 권유 규제 및 위임장 양식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확인하고, ② 대리인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별도의 대리인 계정을 제공하고,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출석·질의·투표하는지 기록해야 한다. 한편 동일한 대리인이 여러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임관계별로 의결권을 구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과 관련하여, 회사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31][32]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주주가 자신의 접속 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상법상 대리권 증명절차를 대신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리권 증명수단으로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가 병렬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리적 제출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정 방식만을 요구함으로써 대리인의 전자출석이 사실상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는 위조·변조 위험을 고려하여 원본 제출 또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주주가 위임 내용을 확인·확정하면 시스템이 대리권의 내용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생성·저장하여 회사에 전달(회사가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과 그 생성·제출시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33] 필요한 경우 위임장 원본 등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리권 증명방법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사전 신청 제도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자가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주(A)가 다른 주주(B)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다른 주주(B)의 주주 본인 확인 내역을 대리인 본인 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1) 2025. 7. 22. 개정상법은 대리권 증명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추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상법은 2027. 1. 1. 시행 예정이나,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대상인 전자주주총회와 그 시행일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그 시행을 전제로 기술한다.

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본다(같은 법 제4조의2). 이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33) 일례로 사전 신청을 전제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상 「주주가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에 사전 접속 → 위임의 취지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전자적 위임장 작성 → 주주가 위임 내용을 확인·확정하면 해당 전자위임장 관련 전자기록을 생성·저장 →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안내(대리인 본인 확인 및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사전 신청 방법 등) →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 출석 방법의 변경 등

(1) 법령 및 기본 방향

상법 제542조의1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3호에 의하면 주주는 현장출석과 전자출석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주주가 출석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주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는 주주가 그 의사에 따라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 중 어느 하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운영을 고려하여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은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사전 신청을 요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주가 출석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신청 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경우: 현장출석을 인정한다. 이때 사전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한다.[34)]
- 현장출석 후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전자출석에 사전 신청이 필요한 회사인 경우, 주주는 사전 신청을 했더라도 현장출석으로 인해 사전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어 버리므로 결국 현장출석 이후에는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

주주의 출석 방법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중복 출석 등에 따른 정족수 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주의 질의 및 발언 등

(1) 법령 및 기본 방향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이를 위해서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 기회뿐 아니라 (수정)의안 제출 및 표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34) 법령에서 규정하는 동시 출석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중복 출석 및 표결 혼선 등)을 억지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은 회의체의 일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지만,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받을 수 있다.[3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2항은 특히 전자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제한 대상은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이므로, '(수정)의안'의 횟수·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수정)의안 제출 등 안건 의결과 직접 관련된 권리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사이에 주주의 질의·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부합한다. 현장주주총회에서의 구두 질의 혹은 발언 시간 제한과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문자 방식의 질의 혹은 발언 글자 수 혹은 입력 시간 제한 등이 그 형식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취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전 질의 접수 및 주주총회 이후 사후 질의 답변 등의 과정에서도 양자 간 실질적 차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이나 의사정리권(상법 제366조의2 제2, 3항) 행사 시에도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일관된 기준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36]

(2) 구체적 권고사항

1) 제한의 기준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2항은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자 입력을 통한 질의의 경우 글자 수, 입력마감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이 질의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엄격하지 않은 이상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제한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미리 정해져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5호 및 제42조의7 제2항).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의장은 사전에 안내된 제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구체적 기준이라 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총회의 규모, 예상 질의 수, 의제의 중요성, 현장출석 주주에게 적용

35) 판례도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을 무제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부산고등법원 2000. 9. 29. 선고 2000나4722 판결).

36)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제안을 한 주주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그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해당 의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때에도 현장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설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되는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경영진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 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적다는 이유 또는 전자출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질의를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이나 의사정리권(상법 제366조의2 제2, 3항)에 속하는 사항 역시 질의 및 발언의 제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 및 발언의 제한과 관련하여 회사가 미리 정해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이는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5호의 소집통지에 포함될 사항들이기도 하다).

- 1인당 또는 안건당 질의 및 발언 가능 횟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1회 발언시간 또는 총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문자 질의의 입력 가능 분량과 제출 마감 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중복 질의, 의제와 무관한 질의, 개인정보 침해·모욕·의사진행 방해 등 제한되는 질의의 처리기준
- 질의 선정·병합·요약의 기준과 의장에게 전달되는 절차
- 시간 내 답변하지 못한 질의의 사후 처리와 공개 여부

2) 제한의 공정한 적용

횟수와 시간의 단위는 '주주 1인당', '안건당', '1회당' 또는 '총회 전체' 중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주식 수나 의결권 수에 비례하여 질의시간을 배분하면 주주의 고유한 질의 및 발언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별로 균등한 기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대리인이 여러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대리인, 즉 실제 참가자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인별로 제한을 적용하면 소수의 대리인에게 시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다른 주주의 질의 및 발언 기회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하는 주주들의 의견이나 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질의의 병합 또는 합리적인 추가시간 부여 등 각 주주의 의사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에게 완전히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어느 한 방식으로 출석한 주주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전체 운영시간과 채널을 배분하여야 한다.

3) 질의의 처리

전자출석 주주가 실시간 문자 입력 방식으로 질의 및 발언을 하는 경우 모든 질의·발언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질의 및 발언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제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노출하거나, 모욕·위협 또는 반복 제출로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내용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루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에 불리한 질의', '답변이 곤란한 질의'와 같은 내용 기반 기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동일·유사한 질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합·요약할 수 있으나, 질의자가 경영진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순위에 두거나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유(예컨대 의제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의임)를 해당 주주에게 알리고, 질의의 일부만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나머지 취지를 살려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자출석 주주의 질의는 회사가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의장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불리한 질의를 임의로 배제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총회 중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수순, 주제별 대표 질의 또는 현장·전자 교대 등 질의 선정 방식을 미리 정해 공지해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질의의 선정 여부, 병합된 질의의 수, 배제 사유와 답변 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처리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당일 질의와 별도로 사전 질의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전자주주총회일 전에 질의 등을 접수하고 총회의 목적 사항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질의 등을 정리한 후 총회 당일 답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전 질의제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전에 질의 등을 접수하는 경우는 횟수 등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전에 접수하는 질의의 처리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그 내용을 소집통지 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질의 제도는 당일 질의권을 대체하지 않으며(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참조), 사전 질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출석 주주의 당일 질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사전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하거나 총회 후 미답변 질의의 개요와 답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은 주주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운영례로 고려할 수 있다.
- 총회 중 답변하지 못한 질의를 총회 종료 후 답변하기로 하고 소집통지 등을 통해 답변대상, 답변 예정일과 게시장소 등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 그 안내대로 주주들에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만약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총회 종료 후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7]
- 질의 등 접수 현황, 그 선정·병합 이유 등을 총회 종료 후 공개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38]

마. 의결권 행사 및 표결

(1) 법령 및 기본 방향

전자출석 주주는 법률상 '출석' 주주에 해당하므로(상법 제542조의14 제4항), 당연히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1호는 소집통지 시에 의사 참여 방법을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 진행, 표결 결과 및 가결 여부 발표,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에 있어서 현장주주총회 및 전자주주총회의 일관된 운영이 필요하다. 현장주주총회에서의 의장 혹은 사회자에 의한 표결결과 구두 발표와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표결결과 안내 등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68조의2의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있어서 위 규정상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 외에 불통일행사 허용 여부를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에게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37) 5. 다. 참조.
38) 5. 다. 참조.

(2) 구체적 권고사항

1) 의결권 행사 등

회사는 전자출석 주주 또는 대리인이 사전에 안내받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결권 제한은 주주별로 다를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처럼 모든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퍼센트 초과 의결권 제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안건별·상황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① 주주 또는 대리인의 출석 자격, ② 질의·발언 등 의사 참여 권한, ③ 안건별 의결권 수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주주, 제한능력자인 주주, 공유주주, 신탁·수탁 관계, 외국인주주의 상임대리인 등은 기존의 의결권 행사 및 제한 법리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전자주주총회라고 하여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자출석 주주 또는 대리인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

- 회사가 제공하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및 참고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 회사는 질의 접수 마감 시각과 표결 마감 시각을 정할 때 지연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감 시각을 미리 고지한다. 마감 후 집계·결과 표시까지에도 일정한 간격을 둔다.
-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목표 지연 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표결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정상적 표결이 어려운 경우 총회의 연기·속행 절차를 밟는다.
- 표결 채널에 대해서는 중계 영상의 지연이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가 의결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의결권 행사 완료 메시지 표시 등)를 갖추는 등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한다.
- 의결권 행사 현황(통신장애 발생 등 포함)의 경우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 및 기록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한다.

39) 2. 다. (4) 3) 참조.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현장주주총회는 박수, 거수 혹은 투표용지 방식 등이 사용되고,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을 통한 입력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표결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후 현장주주총회에서 박수 혹은 거수 등의 표결방식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전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

주주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의결권 행사는 철회,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사전 신청만으로 사전 의결권 행사가 철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가 있거나 실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사를 철회·변경해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사무 및 표결 진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가 사전 신청을 하는 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때에 사전 의결권 행사 철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취할 수도 있다. 사전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주주의 진정한 의사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 안내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의결정족수 계산 등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전자출석 주주의 중도 퇴장 또는 통신장애에 따른 일시적 접속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의결정족수 등 계산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출석 주주의 출석·퇴장·재접속 및 의결권 행사 기록을 엄격히 관리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결정족수 계산 기준은 안건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결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바. 총회의 연기와 속행

(1) 법령 및 기본 방향

전자주주총회에서는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전자출석 주주의 상당수가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주주총회에서 그 적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통결의를 통해 총회를 연기·속행할 수 있다(상법 제372조 제1항). 이러한 일반론을 전자주주총회에 적용할 경우 보통결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통신장애 등이 발생한 총회를 연기·속행할 수도, 이를 그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주주총회의 연기·속행 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40]

(2) 구체적 권고사항

전자주주총회에서 통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총회를 연기·속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선 ① 개별적인 사전 결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자주주총회 개회 선언 직후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총회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의장에게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권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두는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서 ② 정관 또는 주주총회 운영규정에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조항(예컨대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총회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의장에게 총회의 연기·속행권 부여)을 두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그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41] 총회의 연기·속행은 원래 주주총회 권한이므로 주주총회 운영규정에 이러한 조항을 둘 때에는 이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42]

① 또는 ②에 의해 의장에게 판단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의장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상적인 총회 진행이 불가능한 때에만 연기·속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① 또는 ②의 방식으

---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0(2023. 11. 24. 정부 발의) 제372조 제2항에서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41) 3. 가. (2) 참조.

42) 2. 다. (2) 2) 참조.

로 총회의 연기·속행이 결정된 경우 전자출석 주주가 연기·속행 사실과 후일의 총회에 관한 정보를 모를 수 있으므로 미리 비상 통지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43]

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1) 법령 및 기본 방향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므로, 주주의 모습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되거나 녹화·저장될 수 있다. 또한, 전자출석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 등에서 주주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제42조의6 제2호는 회사 또는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전자주주총회에 필요한 물적 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관해 상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가 의사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전자출석 주주들에게 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때에도 현장출석 주주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사진행 상황을 중계할 때에는 의장이나 현장의 분위기, 의사진행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질의 및 발언에 나선 현장출석 또는 전자출석 주주의 모습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상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성명이나 주주식별정보, 인증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영상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회사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44]

---

43) 미국의 경우 통신장애 등으로 총회의 연기·속행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일의 총회일을 미리 설정해 두고 주주에 안내하는 실무례도 있다.

44) 상세는 2. 바. 참조.

5. 종료 단계에서의 법적, 실무적 조치

가. 의사록의 작성

(1) 법령 및 기본 방향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73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73조 제2항).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 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3항). 총회의 개최방식이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를 따로 개최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독립된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구체적 권고사항

총회 의사록에는 상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안건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총회 의사록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자출석 주주의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도 현장출석 주주의 것과 통합·합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에 특유한 사실로서 통신장애 등 발생 시 그 사실 및 회사의 조치와 복구 개요 등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의 보존·비치 및 공시의무

(1) 법령 및 기본 방향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 2항). 나아가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총회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상법 제542조의15 제4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9), 이 기록을 총회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5 제5항). 결국 회사는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총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등사 제공과는 별도로 전자주주총회에서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 이외에 회사는 향후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출석, 질의 및 발언, 표결 진행의 세부 기록들을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구체적 권고사항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실제 교부하는 서류에 따라 보존 및 열람 제공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사진행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에게 교부한 서류에는 소집통지서 및 소집공고문,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류의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은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9). 이는 전자출석 주주에 대하여 현장출석 주주와 달리 서면이 아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서류가 제공된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내외부의 전자저장매체를 활용하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멸실·훼손에 대비하는 조치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회사가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주총회 관련 기록 중 전자주주총회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① 통신장애 발생에 관한 것[45]과 ② 의장이 주주의 질의를 처리한 내역에 관한 것[46] 등이 있다.

① 통신장애 발생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주주총회 중 통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발생 사실 및 회사의 조치와 복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통신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총회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

45) 2. 마. 참조.
46) 4. 라. (2) 3) 참조.

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대응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가 전자통신 장애 등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합리적 대책을 취하였다면 전자통신 장애로 전자출석 주주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적어도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의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신 장애 발생사실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고 할 때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에 관한 기록도 직접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위탁 계약 시 해당 기록의 회사에 대한 제출 절차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47] 만약 위탁 계약 시 관련 절차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장이 주주의 질의를 처리한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회사는 전자출석 주주의 질의 현황, 질의의 선정·병합 경과, 배제사유, 답변 현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의 취급 및 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총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질의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주주총회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문자 등으로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고 의장이 이에 모두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모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는 경우 공정성 시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질의에 대한 처리기록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이 기록의 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후속조치 등

(1) 법령 및 기본 방향

상법상 회사가 주주총회 종료 후 총회 결과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 후 당일에 주주총회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48]

한편 회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총회 종료 후 미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49] 또한 회사는 총회의 적정성·투

47) 2. 라. (3) 참조.
48)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라목.

명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등 접수 현황과 그 선정·병합 이유 등을 총회 종료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50]

(2) 구체적 권고사항

회사가 총회에서 답변하지 못한 질의를 총회 종료 후 답변하기로 하고, 소집통지 등을 통하여 답변대상, 답변 예정일과 게시장소 등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 그 안내대로 주주들에게 공개하면 될 것이다. 만약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총회 종료 후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질의 등 접수 현황, 그 선정·병합 이유 등을 총회 종료 후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49) 4. 라. (2) 3) 참조.
50) 4. 라. (2) 3) 참조.